헌법학자들 "이재명 대통령 당선땐 재판 5년 이상 연기"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시 내란 외환죄 제외 형사소추서 제외 민주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7일 대선 이후로 연기되 면서 만약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 동안 재판이 연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서는 '대통령에 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 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

이에 따르면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임기 를 마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소 5년 이상 연기된다. 일각에서는 현행 헌법에서는 '형사상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 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 한다고 해석될 경우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은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의 취지상 대통령 임기 중 재 판이 계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학자인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을 하기 위한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물며 대통령 임기 동안 시효도 중단되는데, 중 대한 내란・외환이 아닌 이상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해도 될 재판을 굳이 임기 중에 해서 국정 혼란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검사가 형

사 재판을 수행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까 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적지 않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검색' 사이트에는 형사소추를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 을 의미한다"며 "형사사건에 관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포함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 이라고 보면 당선 시 기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

다음 달 3일 대선에서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 로 당선되면 우선은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취

현행법상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른 재판 진행 여 부와 별개로 입법적으로 논의가 정리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 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 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 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후보가 받는 나 머지재판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면소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한 경 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 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 재판 정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국힘, 퇴장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 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개정안을 의 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 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 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

판받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

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

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이날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 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검 임명 법률안'도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민 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 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 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며 "민주가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 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건강한 사회체제 현상"이 라며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 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폭주와 숨 기기가 아닌 재판 수용과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한 다"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강화

이상갑 광주시 부시장 합류…법률자문단서 사법리스크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법률지 원단 강화에 나섰다.

이 후보의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 됐지만,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결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이 민주당 대선 캠프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 기 위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부시장의 사직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제안이

지만, 이 후보의 이력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시장은 이날 "5월 1일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정적인 대선이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발생 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해 민 주당의 제안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사직 이유 를 밝혔다.

신안 출신인 이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 부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등을 거쳤다. 당시 형사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 상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주요 보직 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 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이런 이 부시장의 경험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 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이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 등을 할 인사로 이 부시장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 부시장은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 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민주당의 사법 위기는 대선 후까지도 계속 가는 문제라고 생각한 다"면서 "문제의 핵심이 법률적인 부분이고 현재 있는 법적 규정들을 꼼꼼하게 활용해서 잘 대응하 느냐 문제와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등을 담당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개념' 불확실"

김용빈 사무총장 국회 출석…민주 "법관 자의적 해석 여지, 법 개정 필요"

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 위'라는 개념이 포함돼있는 것과 관련해 "불확실 성이 있다.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 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파기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 려진 소위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허위 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관이 자 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 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차 단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이 법조항에서 '행위'를 아 예 삭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21년 결정을 근거로 삼았다.

김 사무총장은 "문제는 '행위' 자체가 들어있다 고 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언 행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 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5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 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빛드림 해남 학기 리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2025년 5월 8일 발전사업의 명칭 : 빛드림 해남 학가리 태양광발전사업 2. 발전사업의 위치 : 전남 해남군 송지면 학가리 249-28 일원 3. 발전사업의 면적 : 8.436㎡(2.552평)
- 4.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월선시합의 **무료 대중** 1) 발전용량 : 1MW 급 2) 설비개요 : 태양광 발전소
- 사업개시예정일: 2026년 5월 예정
- 4) 사업운영기간 : 20년간 운영 예정
-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 구(2개월 기단 홍 중 명 1)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2025년 5월 15일까지) 2) 의견제출 방법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
- 하여 자유양식으로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
- 우 편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 11층
- 전자메일 : sonjh@dreameng.co.ki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텃밭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융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권 통합바이오가 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

목 포 시 장

- •사 업 명:목포권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민간투자사업(BTO) 치 :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환경에너지센터 내)
- 사업방법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사업규모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80톤/일(300일/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90톤/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90톤/일), 폐수처리시설 1식
- 추정 총사업비 : 70,133백만원(2021.1.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8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목포바이오에너지센터주식회시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 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O) 서류 제출[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5.6.7.,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25.8.6. ,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접수장소: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032-590-3353)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받지 않고,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전라남도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목포시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목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부지 경계가 표기된 도면 등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목포시 자원순환과(☎ 061-270-8585)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목포시 자원순환과에 질의서(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에 일괄 게재함.
-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원순환과 (☎ 061-270-8585)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시업부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직통전화 062) 521 -4109 010-2785-0073